

축산업등록제 시행방안



이 내용은 지난 6월 25일 농협중앙회에서 개최된 축산업등록제 시행방안 공청회 자료이며, 일반 낙농농가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하여 농가 여러분의 올바른 판단을 돕고자 게재 하였으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.

-편집자 주-

1. 도입배경 및 의의

가. 도입배경

- 축산업의 전업화·규모화·분업화 진전에 따라 국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
- 사육밀도의 증가에 따라 질병발생 가증성이 높아지고 발생시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음
- 양돈·낙농업 등의 축산분뇨 발생 및 집중도 증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바라는 일반국민의 요구와 상충
- 축산물 위생·안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져 축산물 생산·소비의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한 안정성 관리 필요성 증가

→ 개별 농가단위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농가 등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축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 전체에 영향을 미침

- 이에 따라 축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친환경 축산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지원 및 지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며, 농가와 생산자 단기간 정보교류 확대를 촉진하여 자율성을 높이는 등 선진축산체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축산업 등록제 도입('02. 12 축산법 개정)
- 친환경 축산 직불제 도입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함께 강구

(외국의 사례)

- 네덜란드, 벨기에, 프랑스 등 EU의 각국도 농가별 농경지 면적 확보, 사육 두수 상한 설정, 분뇨발생 및 사용량 규제, 가축의 추적가능성 확보 등을 위해 축산농가 등록 실시
- 대만은 '97년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'98년부터 목축업 등기제를 도입하여 환경보전과 축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해 축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

- 생산자단체 등을 통한 농가교육실시로 자조기능 활성화
- 축산정책 추진의 효율성 증대
- 등록농가의 사육규모, 방역상황 등을 효율적으로 파악·분석할 수 있게 되어 농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실시 가능
- 등록농가에 대한 전자우편 등을 통한 실시간 정책홍보 강화 가능
- 일부 국민에 불편을 주는 축산업에 대한 지도·관리 효율화

나. 도입의의

국민과 함께 하는 선진축산업으로 도약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, 농가, 생산자 단체와 정부가 함께 등록제를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개발·추진을 위한 노력과 협력 필요

-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안정축산물 생산촉진
- 농가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생산부터 소비까지 추적가능성 확보
- 사양·방역 및 안전관리 등 농가정보의 체계적·종합적 지원
- 다수 농가와 접촉하는 종축업·부화업·계란집하업 등에 대한 관리강화로 안정성·가축질병 방역 효율화
- 친환경 축산업으로 전환유도
- 등록농가에 두당 축사면적 확보, 축산 등 청결 유지의무 부여
- 일정 사육 조건 충족시 친환경 직불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
- 등록농가 위주 정책사업 추진으로 전업화·규모화 간접유도
- 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의 자조·협력 기능강화
- 희망시 농가간, 농가와 단체간, 단체와 단체간 정보 공유가능
- 등록농가 전산 D/B 표준화를 통한 농가가 정보교류 활성화

다. 축산법 개정내용('02. 12 개정)

- 축산업의 등록 등
- 부화업, 계란집하장, 종축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소사육업, 양돈업, 양계업 등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·군수에 등록하여야 함
-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 기타 부정한 등록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
- 휴업·폐업·영업 재개 또는 등록사항 변경시 30일 이내에 신고
- 양수·상속 등으로 축산업 등록자 지위승계시 30일 이내에 신고
- ※ 신고 미이행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- 다음의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 영업정지 명령
- 중요한 시설·장비 미구비,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, 타인에 등록명의 대여,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영업 미개시, 신고않고 2년 이상 휴업시
- 축산업 등록자의 준수사항
- 축산업 등록자는 가축의 개량, 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함
- ※ 준수사항 위반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
- 등록기간
- 기존 종축업·부화업 신고자는 등록한 것으로 간주
- 기존 계란집하장 경영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등록
- ※ **법시행일**: '03.12.27
- 기존 가축사육업자는 시행일로부터 2년의 범위 안에서 가축의 종류·사육규모 등에 따라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등록

2. 시행방안

가. 등록대상 농가범위

〈기본방향〉

- ◆ 관리 가능한 최소규모 농가까지 등록을 실시
- 등록제의 영세농가와 정책지원 등을 차별화하여 규모화 유도
- ◆ 행정수요와 축종별 농가 수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

(1) 대상농가 구분·관리의 필요성

- 등록대상 농가는 가축질병 방역이나 축산물안정성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는 전 농가를 등록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함
- 그러나 전 농가를 등록할 경우 행정수요 증가, 사후관리 어려움, 질병방역의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에 대해 등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함
- 축산과가 설치된 시·군은 10개소('01년 말)에 불과하며
- 대부분은 시·군별 축산계 직원 3~4명이 가축방역, 농가지원 등 모든 축산관련 업무처리
- 소규모 부업농가의 경우 경기상황에 따라 판매·입식이 반복될 경우 사육여부 확인 등이 어려움
- 휴업 및 영업재개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등 부

과로 부담 증가

- 대규모 농가는 상대적으로 질병발생 위험에 노출 수준이 높으나 소규모 농가는 자가노동력과 농가 부산물 활용, 인근농가 등과 접촉이 적고, 조방적 사육으로 질병발생 위험이 낮아 소규모 농가까지 전 두수를 등록할 때 투입노력에 비해 질병방지효과는 적음

※ '00~'02년 농가규모별 구제역·돈콜레라 발생현황

- 소(16건) : (10두 미만) 1건, (10~29) 4, (30~49) 6, (50~100) 5
- 돼지(28건) : (100두 미만) 0건, (100~299) 3, (300~499) 2, (500이상) 23

※ 대규모 농가의 질병노출 가능성이 높은 사유

- 고용노동인력이 많고 특히 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
- 농가간 기술·정보교류 등을 위한 접촉과 해외여행 등이 활발
- 수입조사료 등 외국산 사료사용량이 많음
- 대규모 가축의 밀집사육으로 인한 발병위험이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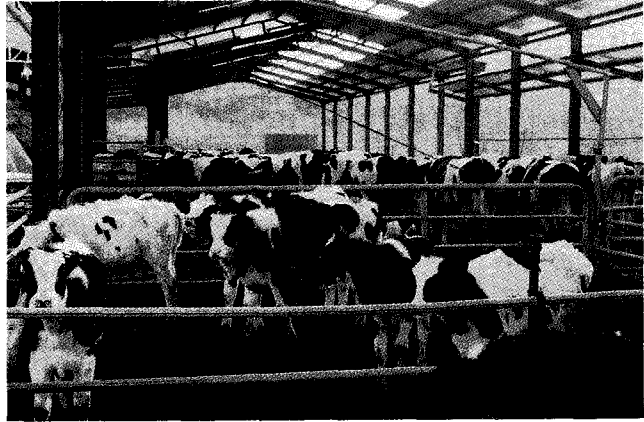
(2) 등록대상 농가범위

- 축종별 사육농가·두수 현황, 전업농가규모, 분뇨 발생량, 질병발생·전파법령 규정 등을 감안하여 검토
- 소규모 농가의 농가수와 사육두수가 많은 축종의 경우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등록기간 연장
- 분뇨발생량이 많은 축종은 등록규모 하향조정 또는 조기등록

※ 축종별 축산분뇨 등 배출원단위(환경부 고시)

- 한육우 14.6 l/일, 젖소 45.6 l/일, 돼지 8.6 l/일, 닭 0.12(미고시)
- 질병발생·전파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록대상 농가범위 확대
- 농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소독시설 설치 시설규모 및 오

분법 축산폐수배출시설 허가·신고규모 분류사례에 따라 농가규모 구분



□ 축종별 검토

① 한육우

○ 한육우 농가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농가가 많아 등록규모를 낮출 경우 행정 수요 증가(10두 미만 농가 18만호, 86%)

— 영세·고령농가가 많아 등록대상 파악이 어렵고, 등록 후에도 경기상황에 따라 판매·입식반복 등으로 사후관리 곤란

※ 규모별 사육현황

(10두미만) 181천 호, 86%/467천 두, 34%

(20~30두) 20천 호, 10%/324천 두, 22%

(30두이상) 9천 호, 4%/619천 두, 44%

○ 전업경영규모는 50~100두 수준

○ 두당 분뇨발생량은 1일 14.6 l

○ 질병 측면에서는 농가간 접촉과 수입조사료 사용이 적고, 외국인 고용근로자도 적어 가축 전염병발생·확산 가능성이 낮음

※ 관련법령의 농가규모구분 사례 : (오분법 특정지역 허가규모) 450㎡이상(45두), (예방법상 소독설비설치) 300(30), (오분법상 신고규모) 100(10)

⇒ 농가의 전업화, 규모화, 정보화 등 한우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해 100㎡이상 농가(10두 규모)를 등록

— 등록대상 농가 29천호 수준(전체농가의 14%, 사육두수의 66%)

○ 다만, 소규모 농가의 호수와 사육비중이 높아 등록 및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, 두당 분뇨발생량과 질병전파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등록기간 연장('06년까지)

② 젖소

○ 낙농가는 소규모 농가 비율이 적고, 매일 집유

하므로 낙농가의 소재 파악 및 낙농업 영위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가 용이

※ 규모별 사육현황

(10두미만) 730호, 6%/3,7천 두, 0.7%

(10~30두) 2,740호, 11%/58천 두, 11%

(30두이상) 8,287호, 70%/482천 두, 88%

○ 전업경영규모는 50두 수준, 두당 분뇨발생량은 45.6 l

○ 질병측면에서 매일 집유차의 농가간 운행, 수입조사료 사용이 많아 상대적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전파 가능성이 높음

※ 관련 법령에 의한 농가구분사례는 한육우와 같음

⇒ 소규모농가의 호수와 사육두수가 적고 분뇨발생량과 질병전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, '05년까지 100㎡이상 농가(10두 규모)등록

— 등록대상 농가 11천호(전체 농가의 94%, 사육두수의 99% 등록)

③ 돼지

○ 돼지사육두수는 전업규모 농가가 대부분 사육하며 소규모 농가의 사육두수도 적음

※ 규모별 사육현황

(100두 미만) 9천 호, 51%/157천 두, 2%

(100~500두) 3.5천 호, 20%/896천 두, 10%

(500두이상) 5천 호, 29%/7,921 천두, 88%

- 전업경영규모는 1천 두 수준, 분뇨발생량은 두당/일 8.6l
- 질병 측면에서 대규모 농가일수록 외국인 고용 인력이 많고, 사료·자돈 등 구입 및 돼지 출하 회수 등이 많아 외부 접촉이 많으며 밀집사육 등으로 인해 질병발생 전파 가능성도 높음

※ 관련법령의 농가규모구분 사례 : (오분법 특정지역 허가규모) 500㎡ 이상(500두), (예방법상 소독설비설치) 300(300), (오분법상 신고규모) 50(50)

- ⇒ 전업농가수가 많고 질병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분뇨발생량 등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관리 가능한 최소규모인 50㎡ 이상(50두 규모) 농가를 '05년까지 등록 실시
- 등록대상 농가는 10천호 수준(전체농가의 59%, 사육두수의 99% 등록)

④ 닭

- 소규모 농가가 많으나 사육두수는 대규모 농가가 대부분 점유
- 특히 500수 미만의 부업규모 농가가 대부분임

※ 규모별 사육현황

(500수미만) 172천호, 98%/1.4백만수, 1.4%

(500~3천수) 0.4천호, 0.2%/0.5백만수, 0.5%

(3천수이상) 3.6천호, 2%/99백만수, 98%

- 전업경영규모는 30천수 수준
- ※ 연간 두당소득('99~'01평균): (산란계) 785원, (육계) 373원 · 3천만원 소득규모 (산란계) 38천수, (육계) 20천수, 연간 4회전
- 두당 분뇨발생량은 1일 0.12l, 대부분 분 형태
- 질병 측면에서 간이 보온덮개축사 등 사육환경이 불량하고 (육계), 매일 계란 수집·출하·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으로 인해 질병발생·전파 가능성이 높음
- ※ 관련법령의 농가규모구분 사례 : (오분법 특정지역 허가규모) 500㎡ 이상(5천수), (예방법상 소독설비설치) 300(3천수), (오분법상 신고규모) 150(1.5천수)

⇒ 질병발생 가능성이 높으나 소규모 부업농가의

- 수가 많으면서 사육두수비중이 적으므로 300㎡ 이상(3천수 규모) 농가 등록
- 농가는 3.6천호(전체농가의 2%, 사육두수의 98.1% 등록)

(3) 시기별 등록 추진

- 축산법상 2년인 등록기간('03. 12. 26~'05. 12. 26)을 1년씩 구분하여 1차 년도에는 전업규모농가, 2차 년도 준전업농가 등록 실시
- 한육우사육업의 경우 소규모농가수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3차년도 까지 등록('05년 중 축산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등록범위 확대)
- 희망하는 소규모농가도 조기등록 허용

〈시기별 등록대상 가축사육업 범위〉

- ① '04년 : 전업규모(500㎡)이상 사육농가 등록(19천 농가)
- ② '05년 : 준전업규모 농가 등록(15천호)
※ 한육우 300㎡, 젖소 100㎡, 돼지 50㎡, 닭 150㎡ 이상
- ③ '06년 : 소규모 한육우 농가 등록(20천호) : 100~300㎡

나. 등록사항

〈기본방향〉

- ◆ 축산업 등록시 등록사항 최소화
- ◆ 기타 사업별, 주체별 필요사항은 개별적으로 파악하되 정보의 호환 및 교류가 가능하도록 자료 수집 및 D/B 구축기준 제시

□ 가축사육업

- 축산업 경영자 정보
 - 성명(법인명)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
- 사업장 정보
 - 사업장 주소, 가축사육시설(동수, 면적 및 축사형태), 사육두수 등
- 구비서류 : 주민등본, 시설명세 및 배치도, 분뇨 및 소독시설 설치증명서 등

※ 사육두수는 수시로 변하므로 필요시 행정기관
또는 생산자단체가 조사 실시



- 부화업 · 종축업 및 계란집하장
- 경영주체 정보 : 성명, 주소, 주민번호, 전화번호 등
- 사업장 정보
 - 사업장 명칭, 소재지, 대상축종
 - 사업장 규모(입란능력, 종축두수, 축사 면적, 계란선별능력 등)
- 구비서류
 - 주민등본,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등 사용권리 증명서류
 - 시설의 명세 및 배치도, 분뇨 및 소독시설설치 증명서 등
- 변경신고 사항
- 사업장 명칭, 대표자가 바뀐 경우
- 부화업 : 입란능력(20%이상), 부화대상가축 등 변경시
- 종축 및 가축사육업 : 등록가축 종류, 사육시설면적(20%이상) 변경시

다. 시설 · 장비기준

- 공통기준 : 방역 · 소독시설과 분뇨처리시설 위주로 기준 설정
- ① 가축질병방역 소독설비
 - 가축전염병예방방법상 소독설비 설치의무농가(가축사육시설 300㎡ 이상)는 동법에 규정된 소독설비기준에 적합해야 함
 - ※ 300㎡미만 농가는 별도의 설비 · 장비 기준을 갖추지 않더라도 소독 실시 의무가 있음

- ② 가축분뇨처리시설
 - 오수 ·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지킬 수 있는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을 구비하거나 이에 상응

하는 조치를 취할 것

※ 축산폐수를 처리(퇴비화 등)하지 않고 공공수역에 배출하지 못함

- 개별기준 : 축산업 종류별로 필요한 시설 · 장비기준 설정

① 종축업

- 종돈장과 AI센터의 오염방지를 위해 종돈장내 AI센터내 일반농장을 분리하고, AI센터 내의 생산 · 판매시설 기능도 분리
- 종돈 · 종계 사육시설과 일반가축 사육시설 격리, 임신 · 분만 · 육성 등 사육단계별 구분
- 방역 · 위생을 위한 사람 및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시설 · 장비구비
- 가축전염병예방방법에 의한 질병에 대하여 이상이 없는 곳
- 축산분뇨시설 등 구비

- 시설 등 보완을 위한 소요자금 융자지원
- 강화된 기준 적용은 2년간 유예('03. 12 → '05. 12월)

② 부화업

- 부화업장과 계사는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격리 설치
- 부화실과 병아리방을 갖추고, 배기 · 배수 · 낙진방지 등 시설

- 방역·위생을 위해 사람 및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시설·장비구비
- ③ 계란집하업
 - 원료란과 상품란 구획, 품질검사 공간확보
 - 계란중량선별기, 포장장비 및 조명·환기시설 구비
 - 출입인원, 차량 및 난좌 등 계란운송 도구 소독장비 설치
- ④ 가축사육업 중 백세미용알 생산업(육종종계♂ × 산란실용계우)
 - 종축업(종계업)과 같은 수준의 시설·장비 기준 운영

라. 축산업등록자 준수사항

- (1) 가축 두당 최소축사면적 확보
 - 두당 축사면적은 축사표준설계(건설교통부 공고)의 소요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미흡한 부분을 보완
 - '89년도 표준설계도가 처음 발간·배포된 이래 많은 농가가 직·간접적으로 표준설계도의 사양형태 및 기준에 따라 축산업 영위
 - 표준설계도는 많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제작되었으며 공인된 표준설계도와 다른 등록제 기준을 운영할 경우 농가혼란 초래
 - 새로운 축사 및 경영형태 등의 출현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·보완
 - 적정 축사면적기준을 축종, 축사형태 등에 따라 세분화
 - 농림부 고시로 운영하여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

- 최소 축사면적 기준안
- ① 한육우

- 한육우는 축사형태의 구분없이 경영형태(번식·비육)에 따라 구분하되 일관가육은 우군내 번식우와 비육우 비율에 따라 작성
- ※ 번식우 10㎡, 비육우 7㎡, 송아지 2.5㎡ 이상 확보

② 젓소

- 축사형태에 따라 깔짚, 계류, 후리스틀 축사로 구분기준 제시

계종	축사형태	수당면적	비고	
산란계	케이지	420cm ² /수		
	평사	0.11m ² /수		
산란육성계	케이지	250cm ² /수	100일령까지 사육	
육계	케이지	420cm ² /수		
	평사	무창	0.046m ² /수	
		유창	0.066m ² /수	

· 일관사육을 기준으로 축사형태에 따라 두당 소요면적 제시

※ 깔짚우사 128㎡, 계류우사 8.7㎡, 후리스틀 9.1㎡ 이상 확보

③ 돼지

- 경영형태별로 두당평균 기준면적을 제시
- 1) 일관경영 : 0.89㎡ 이상(번식-분만-자돈-비육)
- 2) 번식경영(1) : 2.51(번식-분만)
- 3) 번식경영(2) : 0.93(번식-분만-자돈)
- 4) 비육경영(1) : 0.72(자돈-비육)
- 5) 비육경영(2) : 0.87(비육)

④ 닭

- 산란계는 사육형태에 따라 평사와 케이지사로 구분
- 산란육성계는 별도 기준 설정
- 육계 케이지는 축사형태 구분없이 설정하고, 평사는 무창과 개방으로 기준 규정

※ 토종닭은 산란계 평사사육 기준 적용

(2) 환경친화적 축산업 영위를 위한 교육 이수
 ○ 교육기간 : 매 년 1회이상 이수(교육시간 누계 2시간 이상)

○ 교육사항 : 가축질병방역, 축산분뇨적정처리, 축산물 위생·안전성 강화, 조사료 확보방안, 가축 및 축사시설 등의 청결유지 등 친환경 축산업 경영방법 등

○ 교육기관 :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·단체

— 생산자단체, 대학, 연구소, 농협, 기타 농업인 교육단체 등

(3) 종축업 및 부화업 등록자

○ 보유종축에 대한 능력검정 및 개체표식(종돈) 실시

○ 종돈 판매시 혈통증명서(또는 확인서) 발급, 매년 종축두수 보고 등 의무 부과

○ 부화업자는 검정기관에서 확인된 종계가 생산한 알만 부화

(4) 기타 축사와 농장 등 청결 유지 등

마. 기타 검토사항

(1) 기존 무허가축사 보유농가 등록대상 포함

○ 축산업 등록은 축산법상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축산업 영위행위를 등록하는 것이며 보유축사의 적법여부는 별개의 문제

○ 건축허가 여부와 관련 없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등록조건에 축사 등의 용어와 시설면적의 확인방법을 포괄적으로 규정

— 축사와 무허가축사 등을 모두 포괄하도록 가축사육시설로 표기

· 법적 용도를 불문하고 실제 가축사육에 사용되는 모든 시설

○ 축산업 등록이 타법에 의한 위법상태를 해소시키는 것이 아님

— 무허가축사의 경우 건축법 등 타법의 규정에 의한 제재 가능

(2) 자금지원(관계부처 협의 중)

○ 등록대상 축산업경영자에 대해 등록에 필요한 시설·장비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

○ 축산업 등록기간 중 지원 : '04~'06년(3개년)

○ 사업비('04) 13,000백만원, 개소당 50백만원(융자 80%)

○ 지원조건 : 3년 거치 7년 상환, 연리 3%

※ '04년 촉발기금운용계획에 반영 추진 중

(3) 농장고유번호 부여 및 D/B 구축

○ 등록농가에 등록번호와 별도로 전국적으로 통용되고 중복되지 않으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농가별 고유번호 부여

— 고유번호는 국제적 번호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

· 숫자와 영문자 5자리 단위로 구성(60백만개 번호부여 가능)

※ 예 : 국제번호(16자리) KORM000AB1234567, 농가고유번호 AB123

— 농가고유번호, 농가등록정보, 휴업·폐업·변경신고 및 행정처분 기록 등 등록내용을 체계적으로 전산관리

○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(등록제 확정 후)

3. 향후 추진일정

○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실시('03. 7월)

○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의(8~9월)

○ 축산업등록제 전산프로그램개발(9~11월)

○ 등록실시(12. 27일부터) ☺